



국가인권위원회공보

국가인권위원회

2021년 4월 15일

제 19권 제 2호

알 립

- 국가인권위원회공보는 당사자(진정인, 피해자, 피진정인) 및 관계인의 인격권을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들의 이름, 소속기관, 주소 등을 익명으로 처리하고, 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결정문의 일부를 수정 또는 삭제함을 알려드립니다.
- 현재까지 발간된 공보는 그 전문이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(<http://www.humanrights.go.kr>)에 게재되고 있으므로, 널리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목 차 -

공 지 사 항

1	인사발령 등	430
2	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주요 동정	438
3	진정접수 · 상담 · 민원 · 안내 처리 현황	442
4	진정사건 처리 현황	444

법령 · 정책 등 권고결정 및 의견표명

1 2020. 12. 10.자 결정 【석탄화력발전산업 하청노동자 노동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】 453

전력산업의 외주화로 인해 산업재해의 하청노동자 집중,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불합리한 임금격차, 필수 장비·보호구 지급 차별 등 석탄화력발전산업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하청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 등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,

- 【1】 국회의장에게, 조속한 논의를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「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」(의안번호 제484호)과 「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488호)의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
- 【2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, 석탄화력발전산업의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하청노동자를 주식회사 한국남동발전·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·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·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·주식회사 한국중부발전 등 5개 발전회사가 직접 고용하도록 발전회사의 조직과 인력, 예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
- 【3】 주식회사 한국남동발전·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·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·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·주식회사 한국중부발전 등 5개 발전회사의 장에게, 기존의 직급별·직무별 배치 등 인력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인력 증원, 조직 확대 등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,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하청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것을 권고

2 2020. 12. 24.자 결정 【강제퇴거·강제철거 시 거주민 인권보호를 위한 의견표명 및 권고】 471

- 【1】 국회의장에게, 행정대집행 계고 시 최소한의 의무이행 기한 도입, 공무원의 행정대집행 현장 입회·감독, 기상특보 발령 시와 공휴일에 행정대집행 금지,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 이의신청 제도 도입, 의무자의 퇴거조치 완료 후 행정대집행 실행 등을 신설하는 「행정대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986호)에 대하여 조속한 논의를 거쳐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
- 【2】 법무부장관 및 법원행정처장에게, 부동산인도청구에 대한 강제집행의 사전 통지 규정, 재개발·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강제퇴거 등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강제집행 현장에 감독 행정청의 공무원이 입회하여 인권침해 여부를 감시하도록 하는 규정, 동절기 또는 약천후 시 주거에서의 강제퇴거 집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「민사집행법」의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

- 3** 2020. 12. 28.자 결정 **【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」에 대한 의견표명】** 486
- 국회의장에게,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해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, 현재 국회 계류 중인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의 조속한 심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
- 4** 2020. 12. 28.자 결정 **【20대 청년을 개별가구로 보장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권고】** 496
- 보건복지부장관에게, 20대 청년의 빈곤 완화 및 사회보장권 증진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부모와 별도가구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·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
- 5** 2021. 2. 8.자 결정 **【『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(2021)』에 따른 정신장애인 인권 증진 권고】** 514
- 【1】** 국무총리에게, 『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(2021)』에 기초하여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범정부적인 정책이 수립·이행되고 관계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들을 유기적으로 조정하고 통할할 것을 권고
- 【2】** 보건복지부장관에게, 『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(2021)』에 기초하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·이행할 것을 권고
- 6** 2021. 2. 18.자 결정 21정책0012 **【「인신매매. 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」에 대한 의견서】** 525
- 「인신매매·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」에 대하여, 위원회의 ‘인신매매피해자 식별·보호지표 활용권고’ (2016. 6. 20) 및 국제기준, 우리나라의 인신매매 사례 외국의 법규와 사례 등을 토대로 의견을 제출
- 7** 2021. 3. 22.자 결정 21정책0010 **【지방자치단체의 이주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대한 정책권고】** 535
- 【1】**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, 방역정책 시행에 있어 이주노동자 등 특정집단을 차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원칙에 기반한 비차별적인 방역정책을 수립·시행할 것을 권고

- 【2】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, 인권원칙에 기반한 비차별적인 방역정책을 수립·시행할 것과 함께, 이주노동자의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노동·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
- 【3】 대구광역시, 경기도지사, 강원도지사, 전라남도지사 및 광주광역시, 경상북도지사에게, 현재 이주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이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는 즉시 행정명령을 중단하고, 처분기간이 만료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명령과 관련된 제재조치를 중단할 것을 권고
- 【4】 대구광역시, 울산광역시, 안산시장에게,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이주노동자 채용 전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을 즉시 중단할 것을 권고

인권침해행위 조사결정

- 1** 2020. 8. 25.자 결정 19진정0200600 【경찰차량 호송 시 안전띠 미착용에 의한 인권침해】 546

경찰청장에게, 피의자 등을 차량으로 호송하는 경우, 긴급성이 인정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교통사고 등 돌발 상황에서 피호송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「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」상 피호송자 안전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권고
- 2** 2020. 8. 25.자 결정 19진정0484900 【경찰의 과도한 장구사용 및 심야조사 등 인권침해】 555

○○○○경찰서장에게, 과도한 경찰장구의 사용으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피진정인 1, 3에 대해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
- 3** 2021. 3. 12.자 결정 20진정0376800 【공직유관단체장의 부당한 인사 조치 등】 566

 - 【1】 ○○시장에게, ○○○○재단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경고 조치하기를 권고
 - 【2】 ○○○○재단의 대표이사에게, ○○○○재단의 전문위원 제도가 인사권 남용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그 운영을 개선하기를 권고

차별행위 조사결정

- 1** 2021. 1. 20.자 결정 20직권0001300 【정신의료기관의 부당한 입·퇴원 등에 의한 인권침해】 582
- 【1】 경찰청장에게, 정신건강의학과에 재원 중인 환자의 진료기록부의 입·퇴원 기록 등을 허위로 기록한 행위에 대해 「의료법」 제22조 제3항 위반 혐의와 입원환자의 퇴원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대면진료 없이 환자를 입원시킨 행위에 대해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1조 제3항 및 제42조 제4항, 제68조 위반 혐의로 피조사자를 수사를 의뢰
- 【2】 보건복지부장관에게,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환자들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동일 병원 내 부당한 입·퇴원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·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·부당행위로 인해 발생한 의료급여 청구비용에 대해 재심사할 것을 권고
- 2** 2021. 1. 22.자 결정 20진정0196300 【불안장애 치료이력 이유 보험가입 거부】 633
- 피진정 손해보험사 대표들에게, ‘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(별지)’을 참고하여 불안장애 치료이력이 있는 사람의 상해·질병보험 가입에 있어 증상의 경중, 동반질환 여부 등 구체적 사정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가입 시기 또는 가입 범위를 제한하지 않도록 보험 인수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
- 3** 2021. 1. 22.자 결정 20진정0561900 【교육전문직 선발 시 기간제교사 근무경력 미인정】 656
- 교육부장관과 ○○교육청 등 9개 시·도교육청 교육감에게, 교육전문직원 선발 시 응시자격 교육경력 요건에서 정규교원과 동종·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기간제 교사의 경력을 인정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
- 4** 2021. 2. 18.자 결정 20진정0452000 【정신병원 강박으로 인한 상해 등】 ... 664
- 【1】 피진정인에게, 환자에 대한 격리 및 강박은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5조에 따라 최소한으로 시행하고,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이를 기록하여,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

것을 권고

- 【2】 관할 시장에게,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조치하고, 관내 정신의료기관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·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

5 2021. 2. 18.자 결정 20진정0667800 【정신병원의 과도한 격리 등】 678

- 【1】 피진정인에게, 환자 격리·강박은 목적 달성을 위해 최소한으로 시행하고 격리·강박 연속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다학제평가팀의 사후회의 실시와 회의록을 남길 것과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전 직원 대상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

- 【2】 관할 시장에게,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 조치할 것과 관내 정신의료기관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·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

6 2021. 2. 18.자 결정 19진정0504400 【청각장애인 청소노동자에 대한 비하 발언】 686

피진정인에게,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

7 2021. 3. 2.자 결정 20진정0243400 【비상대비 업무담당자 선발 시 불기소 처분 등을 사유로 한 차별】 693

행정안전부장관에게, 향후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채용 시 법적 근거 없는 수사경력조회를 통해 불기소처분 경력을 이유로 응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개선 조치를 할 것을 권고

8 2021. 3. 2.자 결정 20진정0861300 【무기계약직에 대한 위험수당 지급 차별】 703

피진정인(□□시장)에게, 공무원과 동일한 위험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근로자에 대하여 수당지급과 관련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 직무에 맞는 수당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

9 2021. 3. 2.자 결정 19진정0695300 【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기관성과급 지급 차별】 712

피진정인(□□의료원장)에게, 무기계약직인 조리원들을 기관성과급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고 해당 수당을 지급할 것을 권고

10 2021. 3. 2.자 결정 20직권0002000 【교권보호 법률지원단 자격제한에 의한 평등권 침해】 **722**
○○교육감 등 12개 교육감에게, 법률지원단 자격을 정하고 있는 교육규칙 및 관련 지침의 내용을 ‘변호사 등 법률전문가’로 개정할 것을 권고

인권도서관 신착자료

1 국내서 단행본 **740**